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 
제262회 1차 정례회

# 검토 보고서

2023. 6. 13.(화)

검 토 안 건	발 의
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(안)	구청장



복지도시위원회  
(전문위원 장홍용)

#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(안)” 검 토 보 고

(보고자 : 전문위원 장홍용)

## 1. 제안경위

- 제안자 : 마포구청장(장애인동행과)
- 제안일 : 2023. 5. 19.
- 회부일 : 2023. 5. 25. (의안번호 : 23-60)

## 2. 제안이유

- 학령기 이후 배움과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갖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 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 촉진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-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(안 제4조)
-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, 운영경비 지원, 장애인 평생교육사업의 지원(안 제5조 ~ 제7조)
- 자문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(안 제8조 ~ 제9조)

## 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장애인복지법」 「평생교육법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첨부
- 입법예고 : 2023. 4. 13. ~ 5. 3. (제출된 의견 없음)

## 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마포구청장이 발의하여 복지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으로 학령기 이후 배움과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갖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 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 촉진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
  -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,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
  -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을 규정하였으며
  -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, 경비 및 평생교육 사업의 지원을
  -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자문 등을 규정하는 등 총 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- 본 조례 제정의 타당성을 살펴보면,
  - 장애인복지법, 평생교육법,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관한 정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타당하다고 할 것임

○ 우리 구의 경우 「평생교육법」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」가 제정·시행되고 있지만 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담당부서 또한 교육정책과로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이고 특화된 평생교육을 수행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음.

○ 또한, 발달장애인의 경우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근거하여 마포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위탁(사단법인 서울장애인 부모연대) 운영 중이나, 발달장애인 외 유형의 장애인에 대하여 입법적 조치가 없는 한계가 있음.

이러한 현황을 감안할 때,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한 특화된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 등을 규정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필요성이 크고 적절하다고 사료됨.

○ 다만, 추후에는 현재 운영 중인 대흥동 소재 뇌병변 비전센터 이외의 장애인 평생학습센터를 설치·운영하는 등 장애인의 접근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## 참고 자료

### 1. 관련법령

#### 장애인복지법

제20조(교육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통합의 이념에 따라 장애인이 연령·능력·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교육에 관한 조사·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.

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전문 진로교육을 실시하는 제도를 강구하여야 한다.

④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그 학교에 입학하려는 경우 장애를 이유로 입학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⑤모든 교육기관은 교육 대상인 장애인의 입학과 수학(修學) 등에 편리하도록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맞추어 시설을 정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#### 평생교육법

제5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.

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·시설·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.

**제20조의2(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)** ① 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시·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시·도교육감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## **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**

**제3조(평생교육의 진흥)**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민(이하 "구민"이라 한다)의 삶의 질 향상과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"구"라 한다)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노력한다.

② 구청장은 구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관한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등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.

**제9조(설치)**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구민의 평생교육 기회를 증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학습센터(이하 "평생학습센터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 다만, 근거리 학습권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동 단위로 평생학습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**제10조(기능)**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평생교육 정책개발 및 연구
2.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
3. 평생교육관련 기관·단체 및 시설의 연계지원
4.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
5. 학습동아리 조직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
6. 평생교육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
7.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## 2. 마포구 장애유형 및 등급별 장애등록현황

2023. 3. 31현재 (단위:명)

구분	계	심한	심하지 않은
등급별 장애인수	12,956	4,973	7,983
간	92	5	87
뇌병변	1,359	831	564
뇌전등	37	13	24
시 각	1,481	344	1,137
신 장	670	498	172
심 장	31	21	10
안 면	13	5	8
언 어	120	60	60
자폐성장애	243	243	
장류, 요루	122	23	99
정 신	516	509	7
지적장애	860	860	
지 체	5,290	1,063	4,227
청 각	2,027	443	1,584
호흡기	59	55	4